

2025. 3. 5.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 3. 5.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러두기

01

이 안내서의 내용 중 선거관리위원회 명칭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음.

-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 포함) 관할위원회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탁선거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위탁선거규칙
- 새마을금고법 금고법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금고법 시행령
- 새마을금고 정관 정관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규약

02

위탁선거에 관한 신고 등의 시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제출 등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03

이 안내서에 수록되지 아니한 내용 등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따로 발간·배부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등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CONTENTS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I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개요

- | | |
|--------------|----|
| 1. 임기 및 선거일 | 10 |
| 2. (예비)후보자등록 | 10 |
| 3. 선거운동 | 11 |
| 4. 투표 및 개표 | 11 |
| 5. 당선인 결정 | 12 |

II

(예비)후보자등록

- | | |
|---------------------|----|
| 1. (예비)후보자등록 요건 | 16 |
| 2.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등 | 21 |
| 3. 후보자등록 신청 등 | 24 |
| 4. 기탁금 납부 | 28 |
| 5.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 29 |

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

- | | |
|------------------|----|
|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 32 |
|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 32 |
| 3.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 34 |

IV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38
2. 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38
3. 선거공보	40
4. 선거벽보	42
5. 어깨띠·윗옷·소품	43
6. 전화·문자메시지	43
7. 정보통신망	44
8.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45
9.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45
10.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47
11. 공개행사 정책발표	47
12.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48

부 록

1-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52
1-2.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53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비)후보자 준수사항	55
3. (예비)후보자 등록 사진파일 규격 등 제출방법	56
4.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57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I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개요

1. 임기 및 선거일
2. (예비)후보자등록
3. 선거운동
4. 투표 및 개표
5. 당선인 결정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개요

1 임기 및 선거일

가. 선거일 : 2025. 3. 5.(수)

나. 선거기간 : 2025. 2. 20.(목) ~ 3. 5.(수) (14일간)

다. 임 기 : 4년(2025. 3. 21. ~ 2029. 3. 20.)

라. 연임제한 : 이사장은 2차에 한해 연임 가능(금고법 제20조제3항)

2 (예비)후보자등록

가. 예비후보자 등록

- 1) 등록기간 : 2025. 1. 21.(화) ~ 2. 17.(월)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 ~ 오후 6시
- 2) 등 록 처 : 관할위원회
- 3) 기탁금액 : 해당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나. 후보자 등록

- 1) 등록기간 : 2025. 2. 18.(화) ~ 2. 19.(수)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2) 등 록 처 : 관할위원회
- 3) 기탁금액 : 해당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 금액

3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기간 : 2025. 2. 20.(목) ~ 3. 4.(화) (13일간)

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다. 선거운동의 정의

- 1)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나)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4 투표 및 개표

가. 투표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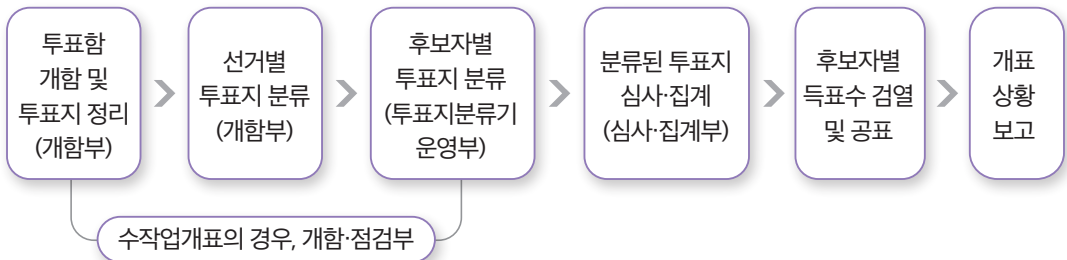
- 1) 직선 : 2025. 3. 5.(수) 오전 7시 ~ 오후 5시
- 2) 총회·대의원회 : 2025. 3. 5.(수) 관할위원회가 해당 금고와 협의하여 정한 시각 ~ 오후 5시
 ※ (대의원회) 결선투표의 경우, 해당 선거일 관할위원회가 해당 금고와 협의하여 정한 시각

나. 투표절차



※ (대의원회) 1차 투표 결과에 따라 결선투표 실시

다. 개표절차



5 당선인 결정

가. 결정기준 : 당선인 결정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름.

선출방법	당선인 결정방법
직선·총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 ※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함.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대의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득표자 ※ 당선인이없는 경우에는 1위와 2위의 다수득표자만을 후보자로 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결선투표에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 당선인 결정 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 중에서 출석 선거인의 과반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나. 당선인 결정 및 공고, 통지 : 해당 금고에서 처리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II

(예비)후보자등록

1. (예비)후보자등록 요건
2.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등
3. 후보자등록 신청 등
4. 기탁금 납부
5.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II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예비)후보자등록

1 (예비)후보자등록 요건

가. 자격기준 : 해당 금고의 회원이어야 함.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등록일 현재, (후보자) 선거공고일(2025. 2. 13.) 현재

나. 결격사유(금고법 제21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금고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2023. 4. 11.>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임원의 결격 사유(정관 제39조제1항)

1.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8호부터 제11호까지, 같은 항 제11호의2·제11호의3·제12호·제12호의2·제13호·제13호의2·제14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자
 - 1의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의 회원으로서 금고에 100좌 이상의 납입출자금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본 호를 적용하는 데에 제15조제1항의 출자 1좌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금액으로 적용하고, 제15조제1항의 출자 1좌의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만원으로 적용하며,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1백만원 이상의 채무(원리금을 포함하되 보증채무를 제외함)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고 있는 자
 - 3의2.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관련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 또는 어음·수표 부도 관련 부도정보에 등록된 자
4.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금고의 사업이용실적(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경우는 선거공고일 1년 전부터 선거공고일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이용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라목의 경우는 선거공고일 전날까지 공제청약이 승낙된 계약으로 산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직장금고 및 설립이나 합병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본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 평잔 : () 이상
 - 나. 제48조제1항제1호 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저축성예금(거치식예금과 적립식예금의 합계) 평잔 : () 이상
 - 다. 제48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 평잔 : () 이상
 - 라. 제48조제1항제5호의 공제사업 이용에 따른 공제유효계약건수 : () 이상
5.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법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5의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으로서 그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삭제<2011.10.25>
- 6의2. 삭제<2011.10.25>
7. 후보자등록개시일(제4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일을 말한다) 전날 까지 본 금고의 직원 및 다른 금고의 대의원이나 임·직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24. 7. 3.>
8. 후보자등록개시일(제40조의2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일을 말한다) 전날까지 본 금고의 임원의 직을 사임하지 아니한 자. 다만,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동일한 직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3.>
9.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까지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자. 다만,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후보자등록개시일 전날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11. 임원선거공고일 현재 본 금고에 재임 또는 재직중인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금고법 시행령 제11조)

-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

• 금고법 시행령 제8조

①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상근이사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것

가. 금고에서 상근임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금고에서 임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금융 관련 국가기관·연구기관·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규약 제6조제4항 : 자격기준 기산일은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2025. 2. 17.) 현재로 함.**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에 관한 특례(부칙 <대통령령 제33779호, 2023. 10. 4.> 제3조)

이 영 시행 이후 각 금고별로 법률 제19329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을 부칙 제3조 본문에 따라 상근이사장을 선출하기 위한 최초의 선거(보선은 제외한다) 시 해당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4년 이상’은 ‘1년 이상’으로 본다.

다. 자격산정기준

1) 피선거권자의 자격산정 기산일은 선거공고일(2025. 2. 13.) 현재로 산정함.

2) 다만, 금고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상근이사장의 자격 기준일, 금고의 임·직원* 등 사직기한 및 경업관계 해소는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2025. 2. 17.) 현재로 함.

* 임·직원이 예비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등록일 전일을 말함.

3) 금고 임·직원 등 입후보제한직의 사직시점은 금고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사직한 것으로 봄.

라. 연임제한

1) 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제3항에 따라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함.

연임제한 관련 유의사항

-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在任)한 것으로 봄.
-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봄.
- 금고법 부칙<제18492호, 2021. 10. 19.> 제3조제8항에 따라 임기가 단축된 경우에는 해당 임기를 연임 제한 횟수에 미포함함.

2) (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후보 전에 해당 규정에 따른 제한자인지를 해당 금고의 지역본부 또는 중앙회 등의 지도를 받아 출마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2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등

가. 등록기간 : 2025. 1. 21.(화) ~ 2. 17.(월)

나. 접수시간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9시 ~ 오후 6시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함.

다. 등록장소 : 관할위원회 사무실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등록장소 도착순서에 의함.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및 작성(발급)방법 등

1) 등록신청서류 목록

	구 분	부 수	발급자	필수여부
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본인	필수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각 1부	해당 기관장	필수
3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이사장	필수
4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 (해당자에 한함)	0부	해당 기관장	필수

	구 분	부 수	발급자	필수여부
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본인	필수
6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	본인	필수
7	기탁금 납입영수증	1부	해당 기관	필수
8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금고 제출용)	1부	본인	관리
9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본인	관리
10	기타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0부	해당 기관장	관리
11	사진 (전자파일포함, 칼라 5x7cm, 최근 3개월내촬영)	1부	본인	관리

2) 등록신청서류 작성(발급)방법 등

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1) 작성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붙임1-1] 서식을 작성함.
- (2) 유의사항 : 각 항목마다 사실대로 작성하고, 신고하려는 예비후보자 인영으로 날인함.

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1) 발급방법 : 예비후보자가 구·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으로도 발급 가능
- (2)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신청함.

다)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 (1) 발급방법 : 예비후보자가 해당 금고에서 [붙임1-2] 서식을 발급받음.
- (2)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2025. 1. 20.) 기준으로 발급받음.

라)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

- (1) 작성방법 : 예비후보자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음.
- (2) 유의사항 : 예비후보자등록 전일까지 사직원을 접수해야 함.
- (3) 제출대상
 - (가) 해당 금고의 임원·직원
 - (나) 다른 금고의 임원·직원 및 대의원

마)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1) 작성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붙임1-3] 서식을 작성함.
- (2) 유의사항 :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와 다름에 유의함.

바) 비경업사실 확인서

- (1) 작성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붙임1-4] 서식을 작성함.
- (2) 유의사항 :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비경업사실 확인서와 다름에 유의함.

사) 기탁금 납입영수증

4. 기탁금 납부 참조

아)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1) 작성방법 : 예비후보자 본인이 [붙임1-5] 서식을 작성함.
- (2) 유의사항 : 각종 신고·신청 시 해당 인영신고서에 의해 신고된 인영을 사용하여야 함.

자)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예비후보자 본인이 [붙임1-6]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금고에 제출함.

바. 등록무효 및 사퇴

1) 등록무효

- 가) 주 체 : 관할위원회
- 나) 사 유 :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사 퇴

- 가)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 나) 신고방법 : 예비후보자 자신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함.
- 다) 신고서식 : [붙임3] 서식에 의함.

3 후보자등록 신청 등

가. 등록기간 : 2025. 2. 18.(화) ~ 2. 19.(수) (2일간)

나. 접수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하며,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마감일 오후 6시까지 관할위원회에 도착하여야 함.

다. 등록장소 : 관할위원회 사무실

라. 등록신청서 접수순서

- 1) 접수개시시각 이후 도착자인 경우에는 접수개시시각 전 도착자 접수 완료 후 그 도착순위에 따라 접수함.
- 2) 접수개시시각 전에 대기하고 있는 등록신청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직원 등이 분담 접수하고, 접수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도착순위에 따라 접수함.
- 3) 우편으로 후보자등록신청을 한 때에는 관할위원회가 이를 접수한 시각을 등록신청시각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 등록신청개시시각 전에 등록신청서가 도착한 경우, 등록신청개시시각에 도착한 것으로 봄.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및 작성(발급)방법 등

1) 등록신청서류 목록

	구 분	부 수	발급자	필수여부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본인	필수
2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포함)	1부	국가경찰 관서의장	필수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부)	각 1부	해당 기관장	필수
4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이사장	필수
5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이사장	필수

구 분		부 수	발급자	필수여부
6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 (해당자에 한함)	0부	해당 기관장	필수
7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본인	필수
8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	본인	필수
9	금고거래이용실적 총족유무 확인서	1부	이사장	필수
10	기탁금 납입영수증	1부	해당 기관	필수
11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금고 제출용)	1부	본인	관리
12	최종학력증명서 (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해당 기관장	관리
13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본인	관리
14	기타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0부	해당 기관장	관리
15	사진 (전자파일 포함, 칼라 5x7cm, 최근 3개월 내 촬영)	1부	본인	관리

2) 등록신청서류 작성(발급)방법 등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 (1) 작성방법 : 후보자 본인이 [붙임2-1] 서식을 작성함.
- (2) 유의사항 : 각 항목마다 사실대로 작성하고, 신고하려는 후보자 인영으로 날인함.

나)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1) 조회방법

(가) 조회주체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나) 조회기간 : 2024. 12. 22.(일) ~ 2025. 2. 19.(수)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부터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 경찰청에서 범죄경력 회보 조회기간을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므로, 여유있게 신청

(다) 조회방법 :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함.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으로도 발급 가능

(라) 필요서류

①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붙임2-2] 서식)

② 신청인의 신분증

③ 금고법, 금고법 시행령, 정관 및 규약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범죄경력 조회 신청을 하기 전에 범죄경력에 관한 법령과 정관등을 금고에 요청 가능함. 해당 법령 등을 미참부 시, 경찰관서에서 조회·회보 불가

(2) 제출방법 : 국가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범죄경력 회보서 원본을 제출함.

(3) 유의사항

(가)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은 후에 1부를 복사하여 원본은 관할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시 제출하고, 사본 1부는 선거공보 작성 시에 활용함.

(나) 범죄경력 회보서 미제출 시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미제출에 해당하여 후보자등록 수리가 불가함.

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구·시·군청 및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음.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으로도 발급 가능

(2) 유의사항

(가)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 신청함.

(나) 위탁선거규칙 제9조(후보자등록)제6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한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그 서류 중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이하 '다.'에서 같음.)

라)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해당 금고에서 [붙임2-3] 서식을 발급받음.

(2) 유의사항 : 선거공고일(2025. 2. 13.) 기준으로 발급받음.

마)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 작성방법 : 후보자가 해당 금고에서 [붙임2-4] 서식을 발급받음.

(2) 유의사항 : 선거공고일(2025. 2. 13.) 기준으로 발급받음.

바)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

- (1) 작성방법 : 후보자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음.
- (2) 유의사항 :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2025. 2. 17.)까지 사직하여야 함.
※ 선출직 공무원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는 적용 제외

사)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1) 작성방법 : 후보자 본인이 [붙임2-5] 서식을 작성함.
- (2) 유의사항
 - (가) 선거공고일(2025. 2. 13.) 또는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2025. 2. 17.) 현재 기준으로 작성함.
 - (나)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와 다름에 유의함.

아) 비경업사실 확인서

- (1) 작성방법 : 후보자 본인이 [붙임2-6] 서식을 작성함.
- (2) 유의사항
 - (가)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2025. 2. 17.) 기준으로 작성함.
 - (나) 예비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비경업사실 확인서와 다름에 유의함.

자) 금고거래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 (1) 작성방법 : 후보자가 해당 금고에서 [붙임2-7] 서식을 발급받음.
- (2) 유의사항 : 선거공고일(2025. 2. 13.) 기준으로 발급받음.

차) 기탁금 납입영수증

4. 기탁금 납부 참조

카) 최종학력증명서

- (1) 발급방법 : 후보자가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음.
- (2) 유의사항 : 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 제출함.
※ 비정규학력의 경우, 선거공보 등에 과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증명서 제출 필요)

타)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 (1) 작성방법 : 후보자 본인이 [붙임2-8] 서식을 작성함.
- (2) 유의사항 : 각종 신고·신청 시 인영신고서에 의해 신고된 인영을 사용하여야 함.

파)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후보자 본인이 [붙임2-9] 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금고에 제출함.

바. 등록무효 및 사퇴

1) 등록무효

가) 주 체 : 관할위원회

나) 사 유

-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2)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가) 후보자등록신청서
 - (나)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등록신청서류 목록 중 '필수'표기된 서류를 말함.)
 - (다) 기탁금
- (3) 위탁선거법 제25조(선거공보)제2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선거 공보를 제출하거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2) 사 퇴

- 가) 신고시기 :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
- 나) 신고방법 : 후보자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함.
- 다) 신고서식 : [붙임3] 서식에 의함.

4 C 기탁금 납부

가. 납부금액 : 해당 금고의 정관으로 정한 금액

- ※ 기탁금은 7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내에서 금고의 실정에 따라 정함.
-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금고가 정한 기탁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 ※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시까지

다. 납부방법 : 관할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기탁금계좌에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자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후 입금표(이체확인증) 제출

라. 납부계좌

- 1)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
- 2) 예금주 :

기탁금의 반환 및 귀속

1. 기탁금의 반환

가. 반환요건 및 반환금액

-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전액
-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대의원회 선출 선거의 경우 기탁금 반환기준은 1차 투표 결과에 따름.

- 3)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납부한 기탁금 전액

나. 반환기한 : 2025. 4. 4.(금) 이내(선거일 후 30일 이내)

다. 반환방법 : 기탁자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현금으로 반환 시에는 영수증을 징구함.

2. 기탁금의 귀속

가. 귀속주체 : 해당 금고

나. 귀속사유 : 반환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귀속금액 : 반환하지 아니한 기탁금

라. 귀속기한 : 2025. 4. 4.(금) 이내(선거일 후 30일 이내)

5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가. 결정시기 : 2025. 2. 19.(수) 오후 6시 후

나. 결정장소 : 관할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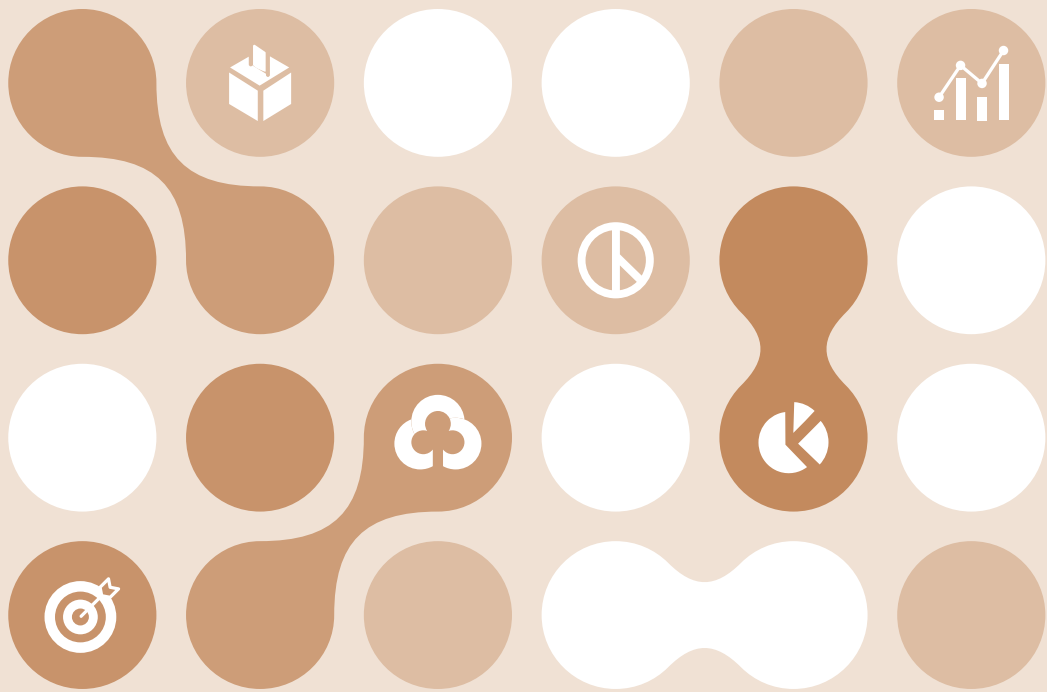
다. 참석대상 :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

※ 대리인이 참석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가 작성한 위임장(붙임4 서식)을 제출받음.

라. 결정방법

- 1) 1차 추첨 : 후보자 성명의 가, 나, 다순에 의해 추첨순위 결정
- 2) 2차 추첨 : 1차 추첨순위에 따라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 결정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III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3.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투표 및 개표참관 등

1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가. 신청권자 : 후보자

나. 신청기간 : 2025. 2. 20.(목) ~ 3. 4.(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신청처 : 해당 금고

라. 신청방법 : 서면으로 신청함.

마. 사본교부 :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1부 교부

바. 유의사항

- 1) 후보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2)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신청서 등 관련 내용은 해당 금고에 문의하기 바람.

2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25. 3. 3.(월)까지(선거일전 2일까지)

다. 신고인원 : 투표소마다 2명 이내

라. 신고처 : 관할위원회 또는 대행위원회

※ 대행위원회가 설치한 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를 관할위원회가 받을 수 있음.

마. 투표참관인 자격

- 1) 투표참관인이 될 수 있는 자: 해당 금고의 회원
- 2)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자: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해당 금고의 임·직원

바. 투표참관인 지정

- 1) 신고인원수가 12명을 넘는 때
 - 가) 후보자수가 12명을 넘는 경우
후보자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함.
 - 나) 후보자수가 12명에 미달하되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12명이 넘는 경우
후보자별로 1명씩 선정한 사람(신고서에 기재된 순위에 따름)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따라 지정함.
- 2)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밖에 없는 때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
※ 이 경우 선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사. 교체시기: 신고 후 언제든지(선거일 투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아. 신고서식: [붙임5] 서식에 의함.

자. 교대참관

- 1)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표관리관의 결정으로 교대참관 가능함.
- 2) 교대참관은 후보자별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함.

차. 참관요령

- 1)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2)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3)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 4) 투표소의 경우 투표종료 후 투표함 등의 개표소 회송 시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1인에 한하여 동반함.

3 C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등

가. 신고권자 : 후보자

나. 신고기한 : 2025. 3. 4.(화)까지(선거일 전일까지)

다. 신고인원 : 개표소마다 2명 이내

라. 신고처 : 관할위원회 또는 대행위원회

※ 대행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개표참관인 신고를 관할위원회가 받을 수 있음.

마. 개표참관인 자격 : 투표참관인 자격과 같음.

바. 개표참관인 지정

- 1) 후보자가 선정·신고한 인원을 개표참관인으로 지정함.
- 2) 다만, 참관인의 선정이 없거나 한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밖에 없는 때에는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4명이 될 때까지 선정함.
※ 이 경우 선거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음.

사. 교체시기 : 신고 후 언제든지(선거일 개표소에서도 교체 가능)

아. 신고서식 : [붙임5] 서식에 의함.

자. 교대참관

- 1) 원활한 개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대참관 가능함.
- 2) 교대참관은 후보자별 참관인수의 2분의 1씩 교대하여 참관함.

차. 투표·개표참관인 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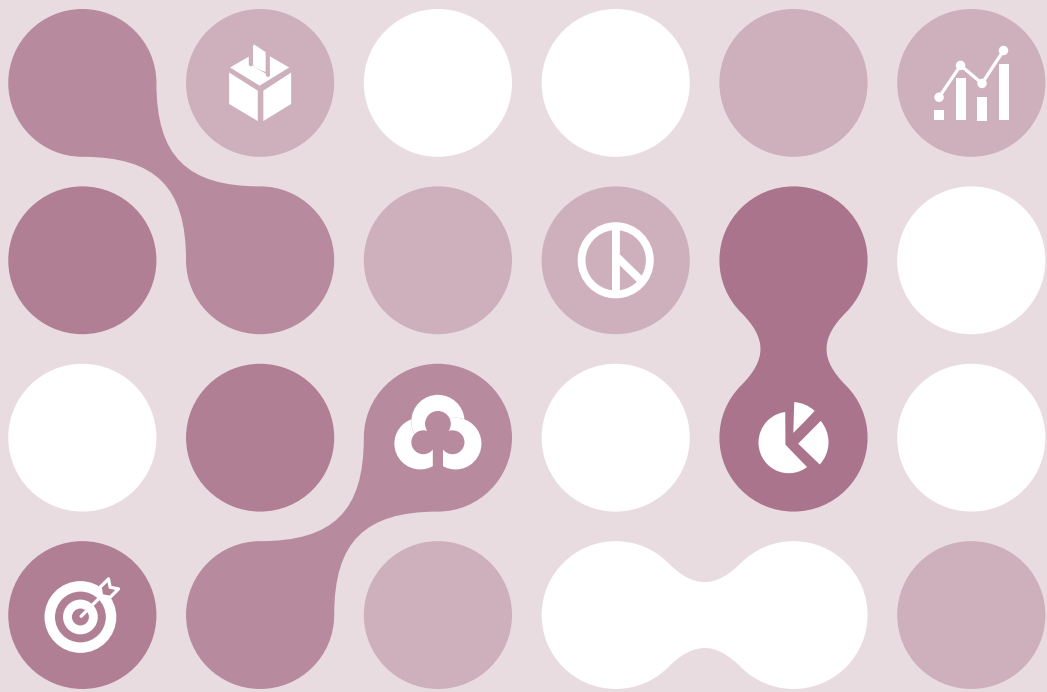
개표참관인은 투표참관인을 겸임할 수 있음. 이 경우 투표참관인 신고시, 신고서의 비고란에 '개표참관인 겸임'으로 기재함.

카. 참관요령

- 1)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 2)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는 개표참관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함.

- 3) 개표참관인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 또는 대행위원회를 통하여 요구하여야 함.
- 4)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으며, 개표상황을 후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음.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IV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2. 선거운동의 주체 · 기간 · 방법
3. 선거공보
4. 선거벽보
5. 어깨띠 · 옷 · 소품
6. 전화·문자메시지
7. 정보통신망
8.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9.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10.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11. 공개행사 정책발표
12.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IV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의 정의

가. 선거운동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나.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2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 ※ 선거운동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지정 1명
- ※ 활동보조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배우자·직계존비속·금고의 임직원이 아닌 회원 중 지정 1명

나. 선거운동기간

- 1)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선거운동원·활동보조인) 등록 후 ~ 2025. 2. 19.(수)
- 2) 후보자 : 2025. 2. 20.(목) ~ 3. 4.(화) (선거운동기간 중)
 - ※ (총회·대의원회) 소견발표회는 예외적으로 선거일[2025. 3. 5.(수)]에 가능

다. 주체별·선출방법별 선거운동 방법

※ <약기> (직) : 직선 / (총) : 총회 / (대) : 대의원회

구 분	예비후보자			후보자		
	본인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본인	선거운동원	활동보조인
선거공보(제25조)				○ (직(총)대)		
선거벽보(제26조)				○ (직(총))		
어깨띠·윗옷·소품(제27조)				○ (직(총))	○ (직(총))	○ (직(총))
전화(제28조)	○ (직(총)대)	○ (직(총)대)		○ (직(총)대)	○ (직(총)대)	
정보통신망(제29조)	○ (직(총)대)	○ (직(총)대)		○ (직(총)대)	○ (직(총)대)	
명함(제30조)	○	○	○	○ (직(총))	○ (직(총))	○ (직(총))
	사전공개 행사장 한정(직(총))					
소견발표(제30조의2)				○ (총)대)		
가상번호(제30조의3)				○ (직(총)대)		
정책발표(제30조의4)	○ (직(총)대)			○ (직(총)대)		

라.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신고

- 1) 신고주체 : (예비)후보자
- 2)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 등록 후
- 3) 신고인원 : 선거운동원 1인,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가 장애인인 경우] 1인
- 4) 신고처 : 관할위원회
- 5) 신고방법 : [붙임6-1] 서식에 의함.
※ 활동보조인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6) 유의사항
 - 가)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은 신고 시 배부받은 표지를 잘 보이도록 달고 선거운동을 해야 함.
 - 나)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이 표지를 분실한 경우에는 [붙임6-2] 서식에 의하여 재교부 신청을 해야 함.
 - 다)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의 교체·선임 횟수는 제한이 없음.
 - 라) (예비)후보자는 활동보조인에게 수당·실비 지급 가능함.

3 선거공보

직선·총회·대의원회

가. 선거공보의 작성

- 1) 작성주체 : 후보자
- 2) 작성수량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3) 작성방법(규격 등)
 - 가) 종 류 : 1종
 - 나) 규격 및 면수
 - (1) 규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2) 면수 : 8면 이내
 - 다) 기재사항
 - (1) 1면(필수) : 선거명, 후보자의 기호, 성명
 - (2) 2면(필수) : 위탁선거법 제18조(후보자등록)제4항의 범죄경력
 - ※ 범죄경력을 미기재한 선거공보 제출 시, 후보자 등록무효임에 유의
 - (3)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선거공보·선거벽보·명함에 학력 기재 시 안내사항

위탁선거법에서 학력을 정규학력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금고법 및 정관등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비정규학력도 선거공보 등에 기재할 수 있음.

-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의 경우, 최종학력증명서를 후보자등록 시 관할 위원회에 제출
 - ※ 국내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력의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를 제출
- 2) 비정규학력의 경우, 선거공보 등에 과정명 등을 사실대로 기재(증명서 제출 필요)
 - ※ 비정규학력인 ○○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를 ○○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로'로 기재 시 허위사실에 해당할 수 있음.

선거공보·선거벽보의 위법내용 등에 대한 조치

선거인이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범죄경력(이하 “경력등”이라 함)에 관하여 거짓으로 게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관할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고, 관할위원회가 해당 후보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후보자 그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의 내용이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그 공고문 사본 1매를 선거일에 투표소의 입구에 첨부하며 사안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함.

※ 선거벽보·선거공보의 경력등에 대한 이의제기 : [붙임6-5] 서식에 의함.

- 1)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3)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4) 유의사항

- 가) 후보자가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부족수량만큼의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붙임6-3] 서식)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나) 선거공보 2면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의 ‘후보자의 범죄경력’란에 기재하는 범죄경력 중 실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범죄경력은 후보자가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기재함.

나. 선거공보의 제출

- 1) 제출기한 : 2025. 2. 22.(토)까지(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2) 제출장소·수량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장소·수량
- 3) 제출방법 : 수량 확인 및 운반이 용이하도록 500부 단위로 간지를 넣거나 묶어서 제출함.
- 4) 제출서식 : [붙임6-4] 서식에 의함.

5) 유의사항

- 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는 선거공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공보를 발송하지 아니함.
- 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의 수량이 선거인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등재순에 따라 제출매수에 달하는 순위자까지 발송하며, 후순위자에게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발송하여야 함.

다. 선거공보(투표안내문 포함)의 발송

- 1) 발송주체 : 관할(대행)위원회 또는 금고
- 2) 발송기한 : 2025. 2. 25.(화)까지(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3) 발송대상 : 선거인

4 선거벽보

직선·총회

가. 선거벽보의 작성

- 1) 작성주체 : 후보자
- 2) 작성수량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수량
- 3) 작성방법(규격 등)
 - 가) 종 류 : 1종
 - 나) 규 격 : 길이 53cm, 너비 38cm 상하로 하여 종이로 작성
 - 다) 기재사항 :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선거벽보의 제출

- 1) 제출기한 : 2025. 2. 22.(토)까지(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 2) 제출장소·수량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장소·수량
- 3) 제출서식 : [붙임6-4] 서식에 의함.
- 4) 유의사항
 - 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함.
 - 나)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의 수량이 첩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관할위원회는 해당 금고가 통보한 첩부장소 중에서 선거벽보를 첩부하지 아니할 장소를 지정함.

다. 선거벽보의 첩부

- 1) 첩부주체 : 관할(대행)위원회 또는 금고
- 2) 첩부기한 : 2025. 2. 24.(월)까지
- 3) 첩부장소 : 해당 금고에서 관할위원회에 통보한 첩부장소(주사무소·지사사무소의 건물 또는 게시판, 협의한 장소)
- 4) 보완첩부
 - 가) 첩부주체 : 후보자
 - 나) 첩부사유 : 첩부한 선거벽보가 오·훼손된 때
 - 다) 첩부방법 : 관할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에서 그 선거벽보 위에 덧붙임.

라. 제출된 선거공보·선거벽보 내용의 정정

- 1) 원 칙 : 제출된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는 정정 또는 철회 불가
- 2) 예 외 : 오기나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게재되었을 경우에 제출마감일(2025. 2. 22)까지 해당 후보자가 정정 가능
 - 가) 정정방법 : 후보자가 관할위원회에 서면 요청
 - 나) 요청서식 : [붙임6-6] 서식에 의함.

5 어깨띠·윗옷·소품

직선·총회

가. 주 체 : 후보자와 그의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은 불가

나. 기 간 : 2025. 2. 20.(목) ~ 3. 4.(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종류 및 규격 : 제한없음

라. 방 법 : 어깨띠나 윗옷을 착용하거나,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6 전화·문자메시지

직선·총회·대의원회

가. 주 체 : (예비)후보자와 그의 선거운동원

※ 활동보조인은 불가

나. 기 간

- 1)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선거운동원) 등록 후 ~ 2025. 2. 19.(수)

2) 후보자 : 2025. 2. 20.(목) ~ 3. 4.(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 1)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간 직접 통화
- 2)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

라. 제 한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불가

7 정보통신망

직선·총회·대의원회

가. 주 체 : (예비)후보자와 그의 선거운동원

※ 활동보조인은 불가

나. 기 간

- 1)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선거운동원) 등록 후 ~ 2025. 2. 19.(수)
- 2) 후보자 : 2025. 2. 20.(목) ~ 3. 4.(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 1)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
- 2)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전송

라.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 1) 조치주체 : 관할위원회
- 2) 조치사유 : 위탁선거법에 위반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
- 3) 조치방법 : 해당정보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요청

마. 위법행위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 1) 신청주체 : 삭제된 정보를 게시한 사람
- 2) 신청기간 : 해당 정보가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
- 3) 신청처 : 관할위원회
- 4) 신청방법 : [붙임6-기 서식]에 의함.

5) 결과통지

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의 관리자·운영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요청을 철회함.
- (2) 이의신청인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지함.

나)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함.

8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직선·총회

가. 주 체 : (예비)후보자와 그의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

나. 기 간

- 1)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선거운동원·활동보조인) 등록 후 ~ 2025. 2. 19.(수)
- 2) 후보자 : 2025. 2. 20.(목) ~ 3. 4.(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규 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라. 방 법

- 1)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와 그 선거운동원 및 활동보조인은 해당 금고가 사전에 공개한 행사장에서 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 2) 후보자
 - 가)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할 수 있음.
 - 나)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 금고의 주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의 안에서는 불가함.

9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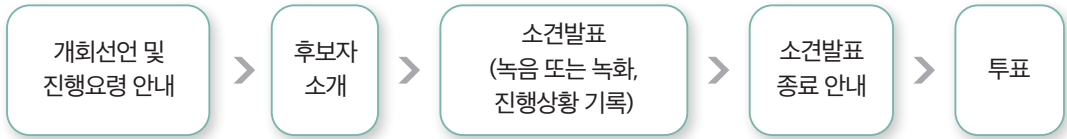
총회·대의원회

가. 주 체 : 후보자

나. 기 간 : 선거일 당일

다. 방 법

1) 진 행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



2) 방 법

가) 투표관리관(또는 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후보자 기호순에 따라 각 후보자를 소개

※ 후보자 소개는 후보자가 연단에 나오기 전 후보자의 성명, 경력(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소개

나) 후보자가 연단에 나와 선거인에게 인사를 한 때부터 기산하여 10분 이내 소견 발표 실시

라. 유의사항

- 1) 후보자가 자신이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 2) 후보자가 위탁선거법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및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에 위반되는 발언을 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등이 중지를 명하고 후보자가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소견발표를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위법내용 발언 시 조치

후보자가 위법내용(허위사실 또는 후보자등 비방) 경고카드를 제시하여 경고하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경우 마이크 전원 차단 및 발언 중단조치

- 3) 소견발표 장소에는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시설물·인쇄물, 그 밖의 선전물을 설치·게시 또는 첩부할 수 없음.

10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직선·총회·대의원회

가. 제공목적 : 위탁선거법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운동에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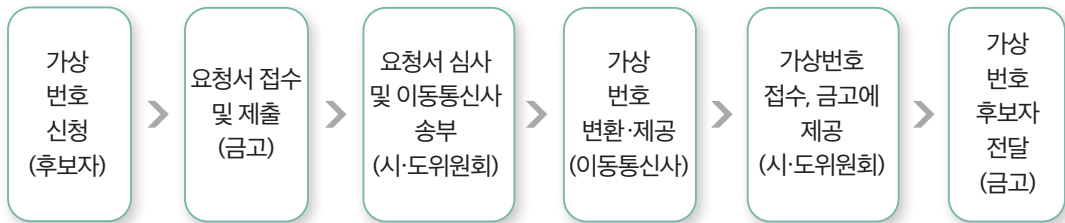
나. 요청주체 : 후보자

다. 요청기간 : 후보자등록 후부터

※ 가상번호 요청부터 제공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신청

라. 요청처 : 해당 금고

마. 요청방법 : [붙임6-8] 서식에 의함.



바. 금지행위

- 1) 후보자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위탁선거법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따른 선거운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2) 후보자가 제공받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11 공개행사 정책발표

직선·총회·대의원회

가. 주 체 : (예비)후보자

나. 기 간

- 1)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등록 후 ~ 2025. 2. 19.(수)
- 2) 후보자 : 2025. 2. 20.(목) ~ 3. 4.(화) (선거운동기간 중)

다. 방 법

- 1) 신고처 : 해당 금고

2) 신고기한 : 정책발표를 하려는 공개행사의 전일까지

3) 신고서식 : [붙임6-9] 서식에 의함.

금고의 공개행사 공고

- 공고주체 : 금고
- 공고내용 : 정책발표가 가능한 공개행사의 일시 및 소견발표 가능 시간 등
- 공고기간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2025. 1. 16.) ~ 선거일 전일(2025. 3. 4.) 매주
- 공고방법 :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

12 C 제한·금지행위 및 위반사례

별도 배부하는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위탁선거법 사례예시집」 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부 록

- 1-1.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 1-2. 후보자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비)후보자 준수사항
3. (예비)후보자 등록 사진파일 규격 등 제출방법
4.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성명: 홍길동 (한자: 洪吉動)
- 주민등록번호: 123456-00000000
- 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00구 00로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기재
- 주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23, 101동 1111호(00동, 00아파트)
↑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 02-1234-5678,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 직업: 금융업 ←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 1개 기재
- 학력: 00대학교 00학과 졸업 ← 최종학력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기재
- 경력: (전) 000금고 대의원, (현) 000금고 이사장
↑ (전), (현) 구분하여 2개까지 기재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00금고이사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인)

00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통(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통).
2.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3.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0부.
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
6. 기탁금 납입영수증 1부.
7.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8.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0부.
9. 사진(전자파일 포함, 칼라 5x7cm, 최근 3개월 내 촬영) 1부.

- 주 :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1-2 후보자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및 작성요령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홍 길 동 (한자: 洪 吉 動)
2. 주민등록번호: 123456-00000000
3. 등 록 기 준 지: 서울특별시 00구 00로 ←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기재
4. 주 소: 서울특별시 00구 00로 123, 101동 1111호(00동, 00아파트)
 ↑ 도로명 주소로 기재
 (전화번호: 02-1234-5678, 휴대전화번호: 010-1234-5678)
5. 직 업: 금융업 ← 현재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직업 1개 기재
6. 학 력: 00대학교 00학과 졸업 ← 최종학력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기재
7. 경 력: (전) 000금고 대의원, (현) 000금고 이사장
 ↑ (전), (현) 구분하여 2개까지 기재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00금고이사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 청 인 홍길동 (인)

00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범죄경력 회보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2통(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통).
 3.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5.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0부.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7.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
 8. 금고거래이용실적 총족유무 확인서 1부.
 9. 기탁금 납입영수증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1.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12.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0부.
 13. 사진(전자파일 포함, 칼라 5×7cm, 최근 3개월 내 촬영) 1부.

- 주 :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2 C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비)후보자 준수사항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비)후보자 준수사항

1. 최소 수집 이용(「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성명·전화번호·이메일 외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필요 최소 수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	법 조항	개인정보 항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전화, 문자)	법 제28조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전자우편)	법 제29조	이메일주소

2. 정보주체의 수집 출처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 1)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수집출처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함.
※ 고지해야 하는 내용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2) 수집출처에 관한 사실을 모른다거나 알 수 없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하여야 함.

3. 수집한 개인정보 파기 관련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당초 수집 목적인 선거가 끝난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함.

4.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수집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5.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립·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함.

6.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공개(「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총괄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예비)후보자를 지정·공개하여야 함.

7. 정보주체의 열람 및 삭제 요청 시 준수사항(「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정보주체가 수신거부나 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 주어야 함.

3 (예비)후보자 등록 사진파일 규격 등 제출방법

사진파일 규격 등 제출방법

1. 디지털 사진(jpg파일) 촬영 규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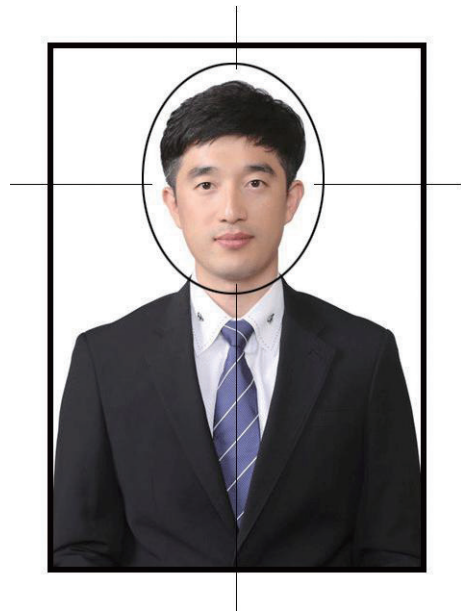
- 해상도 : 300dpi
- 5cm x 7cm

2.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 규격 등

- 5cm x 7cm
- 3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촬영 시 권고 사항>

- 넥타이선의 배꼽 아래까지 촬영
- 양쪽 어깨선이 다 보이도록 촬영
- 얼굴과 몸은 정면을 향하도록 촬영
- 칼라사진



4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1. 예비후보자 등록 관련

- 1-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 1-2.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 1-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1-4. 비경업사실 확인서
- 1-5.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 1-6.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 후보자 등록 관련

- 2-1. 후보자 등록신청서
- 2-2.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 2-3.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 2-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 2-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2-6. 비경업사실 확인서
- 2-7. 금고거래이용실적 충족유무확인서
- 2-8. 후보자 인영신고서
- 2-9.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 (예비)후보자 사퇴신고서

4.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5. 투표·개표 참관인 신고서

6. 선거운동

- 6-1. (선거운동원)·(활동보조인)의 (지정·선임)·(해임)·(교체) 신고서
- 6-2. 선거운동원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 6-3.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 6-4. (선거공보)·(선거벽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제출서
- 6-5. (선거공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 6-6. (선거공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선거벽보) 정정요청서
- 6-7. 위법계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 6-8.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 6-9. (예비후보자)·(후보자)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신고서

붙임1-1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6호서식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 명: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5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 2통(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통).
2.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3.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0부.
4.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
6. 기탁금 납입영수증 1부.
7. 예비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8.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0부.
9. 사진(전자파일 포함, 칼라 5×7cm, 최근 3개월 내 촬영) 1부.

- 주 :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1-2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회원번호(고객번호) :
 주 소 :

상기 회원의 본 금고 가입일자 및 출자금이 2025년 1월 20일 현재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금액 : 원)

출 자 금 계좌번호	회 원 가 입 일	회 원 참 여 기 간	출 자 금 총 액	1 좌 금 액	현 재 보유좌수	비 고

위의 내용이 정관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출자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정히 확인함.

20 년 월 일

○○새마을금고이사장

귀하

회
계

붙임1-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예비후보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회원번호(고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 예비후보자등록일 전일 (년 월 일) 현재 규약에 따라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현재 해당하는 사항이 있더라도 규약에서 정하는 기준일까지 결격사유를 해소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금고 임원의 결격사유(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앙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인)

붙임1-4

비경업사실 확인서(예비후보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회원번호(고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 새마을금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서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 또는 종사하 지 않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더라도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2025년 2월 17일)까지 경업 사실을 해소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금고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 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인)

붙임1-5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예비후보자 ○○○	인 영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비후보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대행위원회등에 배부할 수 있는 매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1-6

개인(신용)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새마을금고 귀중

귀 새마을금고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새마을금고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 새마을금고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당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 · 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 항목

- 일반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회원번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및 임원선거를 위하여 동의없이 처리합니다.

■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단, 보유 · 이용 기간 종료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은 귀 새마을금고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세부 현황은 홈페이지 [www.kfc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 새마을금고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당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

- 일반 개인정보 : 성명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및 임원선거를 위하여 동의없이 처리합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보유·이용 기간 종료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은 귀 새마을금고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세부 현황은 홈페이지 [www.kfc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 새마을금고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당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 신용거래정보 : 금고회원가입일자, 금고거래이용실적, 출자금가입내역, 공제사업 이용내역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부도정보
- 공공정보 : 체납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및 임원선거를 위하여 동의없이 처리합니다.

- 조회한 정보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새마을금고정관(예) 제39조 및 새마을금고임원선거규약(예) 별표1에 근거한 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제공으로 활용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당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및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하며,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대의원 및 임원의 당선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은 귀 새마을금고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새마을금고가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사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등록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중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18조·제24조의2에 따라 피선거권 확인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마을금고에 관계서류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2-1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6호서식

후보자등록신청서

1. 성 명: (한자:)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5. 직업:
6. 학력:
7. 경력: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첨부서류 : 1. 범죄경력 회보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2통(본인 및 배우자 기준 각 1통).
3. 회원가입 및 출자금 확인서 1부.
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1부.
5. 퇴직증명서 또는 사직원 접수증(해당자에 한함) 0부.
6.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7.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
8. 금고거래이용실적 총족유무 확인서 1부.
9. 기탁금 납입영수증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선거공보에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1. 후보자의 인영신고서 1부.
12. 기타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0부.
13. 사진(전자파일 포함, 칼라 5×7cm, 최근 3개월 내 촬영) 1부.

- 주 :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붙임2-2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7호서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조 회 대상자 (신청인)	위탁단체명			
	위탁단체의 주소	(전화번호:)		
	성 명 (한자, 외국인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등록을 위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6조에 따라 범죄경력을 조회하니 조회대상자의 범죄경력에 관한 기록을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 1.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 및 새마을금고 임원선거규약 제6조

○○경찰서장 귀하

주 : 1. "정관등"이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에 따라 위탁단체의 정관, 규약, 규정, 준칙, 그 밖에 위탁단체의 조직 및 활동 등을 규율하는 자치규범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위탁단체의 법령과 정관등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경력에 관한 조문과 조항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2-4

연체채무유무 확인서

확 인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회원번호 (고객번호)	
	주 소			
<p>위 사람이 임원선거공고일(2025년 2월 13일) 현재 귀 금고 및 그 밖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1백만원 이상의 채무를 3월을 초과하여 연체하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관련 공공정보와 어음·수표 부도 관련 부도정보에 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새마을금고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새마을금고이사장 (인)

붙임2-5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후보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회원번호(고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 규약에서 정하는 기준일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 및 새마을금고 정관 제3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에 어긋남이 있을 경우 후보자의 자격박탈 또는 당선무효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금고 임원의 결격사유(새마을금고법 제21조제1항)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제85조제1항,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죄(금고나 중양회의 사업과 관련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3호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3호의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삭제>
8. 제85조제3항 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9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11. 제3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11의2.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257조제1항, 제260조제1항, 제261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2조(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하며, 제257조의 예에 따르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의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1의3. 금고의 임직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 중 다른 임직원에게 「형법」 제303조제1항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에 따라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2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직무정지(업무의 집행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정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재조치 종료일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직 또는 재임 중이었더라면 징계면직 또는 해임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직원이나 임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5년이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 또는 퇴임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13의2.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직무정지 또는 정직의 제재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 임원이나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통보가 있는 날부터 4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6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을 잃거나 정지된 사람
15. 공공기관 또는 다른 법인이나 회사에서 징계면직된 사람으로서 징계면직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6. 회원으로서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 다만, 설립이나 합병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임원 선임 선거일공고일 현재 해당 금고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이나 기간을 초과하는 채무를 연체한 사람
18.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인)

붙임2-6

비경업사실 확인서(후보자)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회원번호(고객번호) :
- 주 소 :

위 본인은 후보자등록개시일 전일 (2025년 2월 17일) 현재 새마을금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종사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이에 어긋남이 있을 경우 후보자 등록무효, 당연퇴임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금고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산림조합 및 산림조합 중앙회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6.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9.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

20 년 월 일

위 확인자 (인)

붙임2-7

금고거래이용실적 충족유무 확인서

확 인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회원번호 (고객번호)	
	주 소			

위 사람이 임원선거공고일 현재(2025년 2월 13일) 현재 귀 새마을금고정관 제39조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고거래이용실적*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인)

○○새마을금고 귀중

위 사실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새마을금고이사장 (인)

※ 직장금고 및 설립이나 합병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에는 적용하지 않음

붙임2-8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8호서식

인 영 신 고 서

후보자 ○○○	인 영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사용할 도장의 인영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대행위원회등에 배부할 수 있는 매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2-9

개인(신용)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새마을금고 귀중

귀 새마을금고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 새마을금고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 새마을금고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당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수집 · 이용됩니다.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 항목

- 일반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 회원번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및 임원선거를 위하여 동의없이 처리합니다.

■ 보유·이용 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보유 · 이용됩니다. 단, 보유 · 이용 기간 종료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은 귀 새마을금고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세부 현황은 홈페이지 [www.kfc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 새마을금고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당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 항목

- 일반 개인정보 : 성명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및 임원선거를 위하여 동의없이 처리합니다.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보유·이용 기간 종료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과 후보등록이 가능합니다.

■ 본인은 귀 새마을금고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3.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NICE평가정보(주)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세부 현황은 홈페이지 [www.kfc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조회의 목적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당 새마을금고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여 당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및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과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일반 개인정보 : 성명, 국적,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 신용거래정보 : 금고회원가입일자, 금고거래이용실적, 출자금가입내역, 공제사업 이용내역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정보, 부도정보

- 공공정보 : 체납정보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대의원 및 임원선거를 위하여 동의없이 처리합니다.

- 조회한 정보는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새마을금고정관(예) 제39조 및 새마을금고임원선거규약(예) 별표1에 근거한 후보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제공으로 활용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조회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대의원 및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정보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당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및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이 소멸하며, 당선된 경우에는 임기만료일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대의원 및 임원의 당선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의 종료일까지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붙임3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9호서식

(예비후보자)·(후보자) 사퇴 신고서

1. 선거명:
2. (예비후보자)·(후보자)성명:
3. 주민등록번호:
4. 사퇴사유: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예비후보자)·(후보자)를 사퇴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비후보자)·(후보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4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9호서식

투표용지 게재순위(기호)추첨 위임장

피위임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후보자와의 관계	

위 사람에게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급고이사장선거의 투표용지 게재순위 추첨을 위임함.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붙임5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투표)·(개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성명:

2. 참관인

투표소명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직업	비고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투표)·(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개표참관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명”칸을 삭제하여 사용합니다.
2. 교체신고시에는 “비고”칸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3. 동시조합장선거 또는 동시이사장선거에서 투표참관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소별로 투표참관인 지정순위(1, 2)를 “비고”칸에 적어야 합니다.

붙임6-1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선거운동원)·(활동보조인)의 (지정·선임)·(해임)·(교체) 신고서

1. (예비후보자)·(후보자) 성명:

2. 신고내역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전화 번호	직업	(지정·선임)· (해임)·(교체)	연월일	비고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지정한 사람)·(활동보조인)을 (지정·선임)·(해임)·(교체)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붙임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장애인증명서류 사본 1부.

년 월 일

(예비후보자)·(후보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구분"칸에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지정한 사람·활동보조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2. 교체하는 때에는 "교체"칸에 이미 신고된 사람 "○○○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3. 활동보조인을 신고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6-2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선거운동원 등의 표지 재교부신청서

1. 분실자 인적사항

가. 신분명:

나. 성명:

다. 생년월일:

라. 주소:

2. 분실일시:

3. 분실장소:

4. 분실사유:

위와 같이 표지를 분실하여 재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분실자 ○ ○ ○ (인)
(선입자) (예비후보자) · (후보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신분명”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지정한 사람·활동보조인 중 해당 신분을 적습니다.

2. “분실사유”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붙임6-3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 선거)

1. 인적사항

기호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세)	직업	학력	경력

2. 후보자의 범죄경력

죄명	형량(처분결과)	처분일자

3. 소명서

주 : 1. 직업·학력·경력칸에 기재하는 내용은 후보자등록신청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2. 후보자의 범죄경력 항목에 기재하는 내용은 후보자등록 시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3. 소명서 항목은 범죄경력에 관하여 소명하려는 경우에만 그 칸을 만들고 소명하려는 내용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붙임6-4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선거공보)·(선거벽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제출서

1. 선 거 명:
2. 후보자성명:
3. 제 출 내 역

구 분	작성수량	제출해야 할 수량(개)	제출수량 (나)	부족수량 (가-나)	비 고
선거공보					
선거벽보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선거공보)·(선거벽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주 : 1. “제출해야 할 수량”은 관할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 수량을 적습니다.
 2. “제출수량”은 관할위원회에 실제 제출하는 수량을 적습니다.
 3.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의 “제출해야 할 수량”칸에는 선거공보의 부족수량에 그 100분의 5를 더한 수를 적습니다.

붙임6-5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선거공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 등에 관한 이의제기서

이의제기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제기 대상자	선 거 명		후보자성명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5조)·(제26조)에 따른 (선거공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선거벽보) 게재내용 중 (경력)·(학력)·(학위)·(상벌)·(범죄경력)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인)

붙 임 : 증명서류 1부.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의제기 내용”칸에는 이의제기를 하고자 하는 대상(경력, 학력, 학위, 상벌, 범죄경력) 및 그 게재내용을 적습니다.

2.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붙임6-6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선거공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선거벽보)정정요청서

선 거 명				
후보자	성 명 (한 자)			기 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 소			

1. 정정 매수:
2. 정정 내용:
3. 정정 이유: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선거공보)·(범죄경력에 관한 서류)·(선거벽보) 내용을 정정하고자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인)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주 : 1. 이 신청서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정정 매수”칸에는 관할위원회에 제출한 매수 중 정정하고자 하는 매수를 모두 적습니다.

붙임6-7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위법게시물의 삭제요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생년월일	
	주소			
삭제요청 사항				
이의신청 사유				
<p>「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인)</p> <p>○○선거관리위원회 귀중</p>				

붙임6-8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수신 : (OO이동통신사)·(OO위탁단체)

경유 : OO선거관리위원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0조의3제1항)·(제30조의3제2항)·(제30조의3제8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1. 선거명:
2. 선거일:
3. 위탁단체 구성원 수:
4.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

붙임: 위탁단체 구성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목록 부

						년	월	일	
신 청 인	[후	보	자	○	○	○	인	
]	○	○	위	탁	단	체	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	○	선	거	관	리	위	원
								회	인

주 : 1. "경유"는 위탁단체가 이동통신사에 가상번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중앙회장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합장선거 및 이사장선거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를 적습니다.

2. "제공요청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을 거부한 구성원을 제외한 숫자를 작성합니다.

〈붙 임〉

일련번호	휴대전화번호	비 고

주 : 1. 휴대전화번호는 번호 사이에 "-" 표시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2. 해당 자료는 위탁단체가 전자적 파일로 암호화하여 제공합니다.

붙임6-9 위탁선거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

(예비후보자) · (후보자)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 신고서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장소	정책발표 시간	정책발표 방법	비고

2025년 3월 5일 실시하는 ○○금고이사장선거에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개행사에서의 정책발표를 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예비후보자) · (후보자) ○ ○ ○ (인)

○○단체 귀중

- 주 : 1. 행사명·행사일시·행사장소는 위탁단체가 공고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정책발표시간은 정책발표가 가능한 시간(위탁단체의 공고 시간)내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합니다.
 3. 정책발표방법은 확성장치 사용 발표, 육성 발표 등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발표하려는 방법을 사실대로 기재하되, 신고 전에 미리 위탁단체와 협의한 후 기재합니다.

5 2025. 3. 5.(수)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주요 일정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법”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은 “규”로, 「새마을금고정관(예)」는 “정관”으로 각각 약기함.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24.9.1까지	일	해당 금고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통보요청	관할위원회	임기만료일전 200일까지	규§3②
9.21	토	관할위원회에 위탁 신청한 것으로 봄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	법§8
9.21부터 25.3.5까지	토 수	기부행위제한	후보자(예정자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 제1회 이사장선거에만 적용	법§34 법§35 부칙<23. 8. 8.>제2조
9.22까지	일	관할위원회에 선거권자의 수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출	위탁단체	임기만료일전 180일의다음날까지	규§3②
25.1.15까지	수	해당 금고 회원명부 정비	위탁단체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전 30일까지	법§15④
1. 21.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법§24의 2①
2. 14.부터 2. 18.까지	금 화	선거인명부 작성	위탁단체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	법§15①
2. 17.까지	월	입후보하는 임·직원 등 사직기한 해당 금고의 임·직원, 다른 금고의 임·직원 및 대의원, 공무원의 사직기한(단 선출직공무원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금고 적용 제외) ※ 해당 금고의 이사장이 해당 금고 이사장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대상 아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정관§39
2. 18.부터 2. 19.까지	화 수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선거기간개시일전 2일부터 2일간	법§18①
2. 19.부터 2. 21.까지	수 금	선거인명부 열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다음날부터 3일간	법§16①

시행일정	요일	실시사항	실시기관(자)	기준일	관계법규
2.20.	목	선거기간개시일			법§13
2.22까지	토	선거공보(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제출서),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법§25①·§26①
2.23.	일	선거인명부 확정	위탁단체	선거일전 10일	법§15①
2.23까지	일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10일까지	규§18①
2.25까지	화	투표안내문 발송(선거공보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서류 동봉)	관할위원회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	법§25③ 법§43
2.28까지	금	개표소 공고	관할위원회	선거일전 5일까지	규§25 ①·②
3.3까지	월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전 2일까지	법§45①
3.4까지	화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후보자	선거일 전일까지	법§45①
3.5.	수	투·개표		투표시간: 오전 7시부터(협의시각) 오후 5시까지	법 제8장
4.4까지	금	선거관리경비 잔액 반환	관할위원회	선거일후 30일까지	규§44②

2025. 3. 5. 실시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인 쇄 : 2024년 12월

발 행 : 2024년 12월

발행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자인·인쇄 : 정우문화사(02-2266-3434)



중앙선거관리위원회